

국토교통부훈령 제2023-1653호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운영지원과)
연 월 일	2023. 8. .

1. 개정이유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여,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 훈령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개방형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 훈령에 규정(안 제7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 및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56조에 따라 감사관, 공항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

②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활력지원과장, 공항운영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

③ 국토지리정보원장, 항공교통본부장 및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별도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<u>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 1항 및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」 제56조에 따라 감사관, 공항정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<u>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활력지원과장, 공항운영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장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u></p> <p>③ <u>국토지리정보원장, 항공교통본부장 및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별도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u></p>